

보고사항

제256회(임시회)제1차행정자치위원회

2007년 1월 23일(화) 10:30

1. 의안 접수 : 3건

의안명	제출자	제출일자	회부일자
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	민경환의원 외 20인	'06.12.22	'06.12.29
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	도지사	'07. 1. 5	'07. 1. 5
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보고의 건	"	'07. 1.15	'07. 1.17
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	"	'06.11.13	'07. 1.17
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	"	'07. 1.17	'07. 1.19

※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

- 2006.11.13일 제출되어 제255회(정례회)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

- 2007. 1.12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

2. 진정서 등 접수 및 처리

접수일자	민원명	민원인	처리 상황	처리 일자
'06.12.28	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행정 심판 진정	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372 오철균	종결	'07.1. 9
'07. 1. 4	용담(호미)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탄원	용담지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김진각	종결	'07.1.12

陳情書 處理結果 通報

건 명	지방도 확포장에 따른 행정심판 진정		접수일자	2006.12.28
민 원 인	주 소	청원군 문의면 남계리 372		
	성 명	오 철 균		
민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원 남일면 ~ 대전 신탄진간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건으로 ○ 「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」에서는 도지사의 관할에 속한 사항의 행정심판청구에 사실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」에 이송 하였음은 무슨 근거에서 인지? ○ 지방도임에도 도로의 측량설계를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직접 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앗아갔으며, 유실우려가 없는 도로를 높여 국고를 낭비하였음. ○ 요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관청의 석명한 답변을 의회에서 지시를 요청함. 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민원은 충청북도지사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청의 적격성,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의 측량 설계·도로 지반고 변경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도의회에서 지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, ○ 우리 위원회에 회부·결정전에 본 민원과 동일한 건을 충청북도지사(법무통계담당관),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질의회신이 완료되었으므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심판의 적정성 :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-6927 (2006. 12. 29)회신 			
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측량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접시행에 대한 적정성 및 도로 지반고의 적절성 :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-9578(2006. 12. 28)회신 ○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 ※ 기타사항 :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 검토한 결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충청북도지사의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송 근거 ·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항 :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. · 행정심판법 제6조 2 :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심판청구를 심리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심판위원회를 둔다. · 행정심판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동조 제5항 : 심판청구서를 받은 10일 이내(정당한 권한있는) 재결청 송부 - 지방도 측량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행의 적정성 · 민원이 제기된 청원군 남일~대전 신탄진 구간 도로는 도로법 제11조에 지방도 성격과 아울러, 도로법 제2조의 3 규정에 의한 국도를 보조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. · 국가지원지방도로의 사업계획 및 조사·설계권은 도로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권한이므로
------	--
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건설교통부장관(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)이 본 진정민원 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32호선의 측량설계를 시행한 것은 하자 없는 행위임. - 도로지반고 변경의 적정성 ·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에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도의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봄. 	
	처리부서	충청북도지사(법무통계담당관실, 건설재난관리본부 건설정책팀), 대전지방국토관리청

歎願書 處理結果 通報

건 명	용담(호미)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탄원		접수일자	2007. 1. 4
민 원 인	주 소	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55-8		
	성 명	용담(호미)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진각		
민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위원회에서 법적 동의율을 확보 호미지구 도시개발 사업제안서를 청주시에 접수 ○ 충북개발공사 측의 각종 언론매체 동원 비방과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주들을 설득 동의서를 철회토록 호도하는 등 비신사적 행동과 ○ 토지 보상을 감정가의 2.5배로 보상한다며 온 동네를 혼란과 불신 조장 ○ 요구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선처 호소 			
처리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용담(호미)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(위원장 김진각)에서 2007. 1. 4일 호미지구 도시개발시행사업과 관련 도의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, ○ 우리 위원회의 종합적 검토 및 결정전에 본 민원인이 신청한 용담(호미)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(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의거 청주시 접수)에 대하여 ○ 2007. 1. 10일 충청북도지사(균형발전본부 지역개발팀)가 지역개발팀-265호로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법적 요건(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			

처리결과	<p>토지소유자 동의)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 불가 결정을 하였으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또한, 제출된 동의에 관한 서류도 각종 동의율 계상의 부적합 판정을 함으로써 (가칭)용담(호미)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한 행정적·법적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○ 본 탄원서에 대한 우리 도의회의 의사표시는 행정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것이 공익적 실익이 있다고 사료됨. ○ 다만, '06. 6. 30일 충청북도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으로 제출된 “용담(호미)지구택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서”에 대한 심의 결정시와 충청북도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시에 용담(호미)지구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과 아울러, 도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통보. 	
	처리부서	충북개발공사, 균형발전본부 지역개발팀